

「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」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14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3월 10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」은 낙원상가 1층에 위치한 공공시설을 악기강습, 악기나눔 중심의 공공시설을 도담권 거점형 생활문화센터로 조성·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나.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,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「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」 운영
- 나. 시설개요
- 시설명 :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
 - 소재지 : 종로구 삼일대로 428 (낙원상가 1층 하부도로)
 - 시설규모 : 580㎡ (큐브 11개)
 - 개관일 : '20. 10. 27.
- 다. 위탁기간 : '22. 8. 9. ~ '25. 8. 8.(3년간)
- 라. 민간위탁금(안) : 756백만원 ('23년 기준)
- 마. 위탁사무
-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 운영·관리
 -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의 공연, 교육 등 시민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 - 시설물과 기타재산의 유지·관리에 관한 사항 등

바.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사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「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」은 낙원악기상가 일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악기강습 및 악기나눔 중심의 생활문화 활동 공간으로서
- 문화시설 운영 및 커뮤니티 활성화에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(단체)을 선정 및 위탁 운영하는 것이 사업 운영의 현장성, 전문성 및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고 아울러 시민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으로 지속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아. 심의결과 : 적정('22년 제2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(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)
-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(센터 설치·운영 등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나. 예산조치 : '23년 예산 편성 필요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문화정책과 시민문화팀 주효근(☎2133-2543)

[지역문화진흥법]**제8조(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)**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·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·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-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[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]**제8조(센터 설치·운영 등)**

- ①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지원 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1. 문화향유 및 체험활동, 전시, 공연 등을 위한 문화 공간 조성 및 운영
 2.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 등의 자율적인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연합회 구성 및 운영 지원
 3. 생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강사 및 소품·장비 등의 지원
 4.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하는 사업
 5.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[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]**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**

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3. 문화·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